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3.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23호로 2023년 3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기간을 조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기간 조정(안 제20조)

1) 재위탁기간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라. 입법예고(2023. 2. 9. ~ 3. 2./21일간) 결과: 의견 있음
- 영등포구국공립연합회에서 현행 유지 의견 있었으나, 위탁의 균등한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미반영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의 균등한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위탁기간을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개정내용으로

- 안 제20조제2항에서는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였고,
- 안 제20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는 무상임대 기간 동안 재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 검토결과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9항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위탁기간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

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라고 명시하면서 이하 단서 조항에서는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음.

- 통상적으로 단서 조항은 조나 항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 사용되는 것으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유’는 ‘일관되고 안정적인 시설운영을 저해할 사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만이 재위탁기간을 5년으로 명시하였고, 영등포구를 포함 24개 자치구에서는 재위탁기간을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위탁운영하고 있음.
-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기간을 일괄적으로 3년으로 줄이게 된다면 구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 또한 재위탁기간 감축 대상이 되며, 짧아진 재위탁기간으로 인해 추가적인 사회·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에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 참 고 자 료

## 1 영유아보육법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생략)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3 (생략)

③~④ (생략)

##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⑧ (생략)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별표 8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 1. 일반기준

가~나 (생략)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마(생략)

바. 「영유아보육법」

###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생략)

-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생략)

### 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시설의 위탁)** ①~② (생략)

- ③ 위탁계약기간은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5조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④~⑤(생략)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3. 27.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124호로 2023년 3월 16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제명변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내용 삭제(현행 조례 제3조~제8조)
- 다. 출산 및 양육지원의 목적, 관련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 추가(안 제1조~제3조)
- 라. 출산 및 양육지원 사업 및 산후조리비용 지원 사업 조항 신설(안 제4조, 제4조의2)
- 마. 민간 위탁 및 중복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5조~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3) 인권영향평가: 인권 침해 가능성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별도의 개선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2023. 2. 9. ~ 3. 2./21일간):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 본 개정조례안은

-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의 발전과 영등포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 주요 개정내용은

- 정부 시책인 1)첫만남이용권 사업 시행 이후, 우리 구의 유사 사업인 출산장려금<sup>2)</sup> 지원이 중지됨에 따라 출산장려금 지급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고 출산 및 양육지원 전반에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명을 기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

1) 국시구비 매칭사업(국비 44.25%, 시비 27.88%, 구비 27.87%)으로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22.1.1.이후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카드적립금) 제공

2) 2021.12.31. 이전 출생아까지 지급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 정의를 개정하였으며,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결혼·임신·출산·양육 등의 지원사업과,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안 제4조의2에서는 산후조리비용으로 정액 5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출산 및 양육 지원사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사무의 위탁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 안 제6조에서는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 조례 개정의 배경으로

- 지난 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sup>3)</sup>이 0.78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까지 떨어졌으며,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으로 전년(26만 500명) 대비 1만 1,500명 (-4.4%) 감소하였고,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2013년부터 줄곧 합계출산율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020년 기준으로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우리나라뿐임.

---

3) 합계출산율 : 한 여자가 가임기간(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

- 또한, 결혼이 늦어짐에 따라 첫 아이 출산 평균연령이 높아져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원만한 건강 회복을 위한 산후조리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지원사업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한 것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 됨.
- 우리 구 사업 중 유사 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사업의 지원대상은 거주요건 충족시에도 소득기준 등 일부 제한사항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의 주요 사업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거주요건 충족 시 모든 산모에게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보편적인 복지지원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됨.

구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지원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자	출산 12개월 전부터 영등포구 거주 산모 (출산 후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출산 6개월 전부터 영등포구 거주 산모 (출산 후 거주요건 충족 시 지원가능)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둘째아 이상, 쌍태아 이상, 장애인 산모 등은 소득기준 제한 없음	제한 없음
신청방법	보건소 방문 또는 이메일 신청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첫째 최대 526천원, 둘째 최대 698천원, 셋째 이상 최대 645천원)	산후조리비 50만원 지원
지원방법	현금 지급	현금 지급
시행부서	영등포구 건강증진과	영등포구 보육지원과

- 또한 출산·양육에 따른 개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국가적 책임을 강화하고자 추진한 첫만남이용권 사업의 시행으로 우리 구의 유사 지원 사업인 출산장려금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법적 적합성과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출산장려금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였고,

- 이와 함께 초저출생 현상을 극복하고자 출산 및 양육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가 타당하다  
고 판단됨.

# 참고 자료

##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 ⑥ (생략)